

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8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9. 21.

발의자 : 정춘숙 · 김영진 · 김윤덕  
김정호 · 김상희 · 윤후덕  
권칠승 · 박재호 · 조정식  
윤미향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,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 · 손자녀의 경우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함께 입소한 자녀 · 손자녀가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이 되어도 부양을 책임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으며, 입소자격자 본인이 초고령 · 장애 · 질병 등으로 스스로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 · 손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동반 입소하는 자녀 · 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한편, 2015년 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규정 중 분양형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법 시행 전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양도(매매 및 중여 포함)가 가능하도록

하고 있음. 그러나 자격제한을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 2007년 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입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및 임대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, 2007년 법 개정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.

이에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·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,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에 대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(안 제33조의2제1항제2호 및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 신설).

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2. 입소자격자의 자녀 · 손자녀

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) 2015년 7월 29일 전에 「건축법」에 따라 허가받거나 「주택법」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(매매 · 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) 또는 임대할 수 있다.

제5조(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) 2015년 7월 29일 전에 「건축법」에 따라 허가받거나 「주택법」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는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.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의2(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 등)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(이하 “입소자격자”라 한다)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 · 손자녀</u></p> <p>② ~ ⑨ (생 략)</p> <p>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3조의2(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 등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입소자격자의 자녀 · 손자녀</u></p> <p>② ~ ⑨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</p> <p><u>제4조(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)</u> 2015년 7월 29일 전에 「건축법」에 따라 허가받거나 「주택법」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(매매 · 증여나 그</p>

<신 설>

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 
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) 또는  
임대할 수 있다.

제5조(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입  
소자격에 관한 특례) 2015년 7  
월 29일 전에 「건축법」에 따  
라 허가받거나 「주택법」에  
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  
복지주택에는 제33조의2제1항  
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  
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 
자도 입소할 수 있다.